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354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목적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안 제1조~제4조)
- 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안 5조~제9조)
- 다. 사업위탁, 사업계획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14,007,391천원 (2025년~2029년 / 5개년)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9. 19.(목) ~ 10.10.(목)(21일간)
- 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 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재단 최초의 임원 선출은 구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복지재단 소요예산 : 14,007,391천원(2025~2029년)
- 기본재산 출연금 : 20억원(설립시 1회)
- 복지재단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운영비,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인건비	626,937	926,144	945,650	965,662	986,195	4,450,588
운영비	102,296	166,488	131,755	132,528	132,808	665,875
사업비	906,966	1,300,678	1,529,478	1,467,118	1,506,688	6,710,928
기본재산	2,00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180,000
합계	3,636,199	2,438,310	2,651,883	2,610,308	2,670,691	14,007,391

- 인건비 : 자원봉사센터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16명 인건비
- 기본재산 : 최초 출연금 및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연평균 2.25%이율)
- 1차년도의 경우 연내 출범에 따른 9개월(4월~12월)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수입	출연금	2,691,425	1,077,221	1,133,494	1,054,279	1,075,092	7,031,511
	보조금	386,511	532,339	670,339	690,539	710,639	2,990,367
	후원금	558,263	783,750	803,050	820,490	839,960	3,805,513
	이자수입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소계(a)	3,636,199	2,438,310	2,651,883	2,610,308	2,670,691	14,007,391
지출	인건비	626,937	926,144	945,650	965,662	986,195	4,450,588
	운영비	102,296	166,488	131,755	132,528	132,808	665,875
	사업비	906,966	1,300,678	1,529,478	1,467,118	1,506,688	6,710,928
	기본재산	2,00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180,000
	소계(b)	3,636,199	2,438,310	2,651,883	2,610,308	2,670,691	14,007,391
□총비용(a-b)		0	0	0	0	0	0

- 이자수입은 차기이월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

4. 재원조달 방안 :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이자수입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기본재산 출연금	2,000,000					2,000,000
보통재산 출연금	691,425	1,077,221	1,133,494	1,054,279	1,075,092	5,031,511
보 조 금	국비	28,934	38,578	38,578	38,578	183,246
	시비	0	0	72,400	72,400	217,200
	구비	357,577	493,761	559,361	599,661	2,589,921
후원금	558,263	783,750	803,050	820,490	839,960	3,805,513
이자수입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합계	3,636,199	2,438,310	2,651,883	2,610,308	2,670,691	14,007,391

- 기본재산 출연금 : 20억원(설립시 1회)

* 기본재산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연평균 2.25% 이율)

- 보통재산 출연금 : 5년간 5,031,511천원(2025~2029년)

- 보조금 사업내역 : 이관사업중 국시구비 보조금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시비		72,400	72,400	72,400	217,200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구비		44,400	44,400	44,400	133,200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	구비	38,258	57,000	61,200	67,400	293,358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57,750	88,000	105,000	119,000	506,750
아름다운 빨래방	구비	25,695	34,260	34,260	34,260	162,735
자원봉사 센터 운영	국비	28,934	38,578	38,578	38,578	183,246
자원봉사 센터 운영	구비	235,874	314,501	314,501	314,501	1,493,878
소계		386,511	532,339	670,339	710,639	2,990,367

- 후원금 수입내역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성북형 사회복지 민간기금 조성	128,213	180,950	190,950	200,950	210,950	912,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430,050	602,800	612,100	619,540	629,010	2,893,500
소계	558,263	783,750	803,050	820,490	839,960	3,805,513

- 후원금 지출내역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저소득 위가정 긴급지원	222,000	296,000	296,000	296,000	296,000	1,406,000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25,500	38,000	45,000	52,000	59,000	219,500
저소득 주민 난방비 지원	4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5,000
저소득 중장년 치과 치료	33,750	45,000	45,000	45,000	45,000	213,750
성북형 사회복지 민간기금 조성 후원금 사업	128,213	180,950	190,950	200,950	210,950	912,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홍보	600	800	800	800	800	3,800
나눔네트워크 운영	43,200	59,000	60,300	61,740	63,210	287,450
기부자예우	18,750	24,000	25,000	24,000	25,000	116,750
소규모 복지시설 기능개선	41,250	80,000	80,000	80,000	80,000	361,250
소계	558,263	783,750	803,050	820,490	839,960	3,805,513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김 도 영